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21

발의연월일: 2022. 6. 14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원욱・문진석

이동주 · 장철민 · 이용우

유관석 • 박상혁 • 변재일

김철민 · 민형배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간편결제·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.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,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·신탁하고,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.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물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의2

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"선불전자금융업자"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를 말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전자금융업자"를 "선불전자금융업자(이하 "선불전자금융업자등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"을 "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"으로 한다.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선불충전금 관리 등)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선불충전금 (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예치(預置)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.

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.

-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불 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
- 1. 국채증권의 매수
- 2.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증권의 매수
- 3.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
- 4.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- ④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49조제5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의2.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한 자
 - 4의3.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불충전금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전 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시 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선불충 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2. "선불전자금융업자"란 제
	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
	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
	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을
	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5. ~ 22. (생 략)	5. ~ 22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	제19조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
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	①
금융회사 또는 <u>전자금융업자</u> 는	<u>선불전자금융</u>
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	업자(이하 "선불전자금융업자
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	<u>등"이라 한다)</u>
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	
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	
여야 한다.	
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	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
<u>자는</u>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	
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	
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	

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 관에 포함시켜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 ______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선불충전금 관리 등)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선불 충전금(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 전자금융업자등에게 사전에 지 급한 금전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 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예치 (預置)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. 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1 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는 그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.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

- 1. 국채증권의 매수
- 2.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

제49조(벌칙) ① ~ ④ (생 략)

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5. ~ 10. (생 략) ⑥ ~ ⑧ (생 략) <u>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</u> 증한 채무증권의 매수

- 3.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
- 4.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정

 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

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 는 방법
- ④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 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49조(벌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 5 -----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4의2.제19조의2제1항에 따라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한 자4의3.제19조의2제3항에 따라선불충전금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
- 5. ~ 10. (현행과 같음)
- ⑥ ~ ⑧ (현행과 같음)